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14. . . (제 회)	

**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**

제 출 자	국무위원 윤 상 직 (산업통상자원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14.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침

1. 의결주문

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2000년 법 개정 이후 산업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및 이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 관련 법률의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며, 따라서 투기·유혹·사치향락 조장 업종이 아닌 일부 서비스 업종에 대한 창업지원 허용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

3. 주요내용

가. 창업지원제외업종의 범위를 축소함(안 제4조)

창업지원업종으로 기타 관광숙박시설운영업, 그외 기타개인서비스업을 추가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통계청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14. 7. 21 ~ 8. 31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호 중 “운영업”을 “운영업, 기타관광숙박시설운영업”으로 하고,
같은 조 제7호 중 “서비스업(산업용 세탁업)”을 “서비스업(그외 기타개인 서비스업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(영)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 법 제3조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업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 종을 말한다. 이 경우 업종의 분 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 으로 한다.</p> <p>1. · 2. (생 략)</p> <p>3. 숙박 및 음식점업(호텔업, 휴 양콘도 <u>운영업</u>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 은 제외한다)</p> <p>4. ~ 6. (생 략)</p> <p>7. 기타 개인 <u>서비스업(산업용 세탁업은 제외한다)</u></p> <p>8. (생 략)</p>	<p>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 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<u>운영업, 기타관광숙박 시설운영업</u> ----- -----</p> <p>4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----- <u>서비스업(그외 기 타개인서비스업--</u></p> <p>8. (현행과 같음)</p>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	
연 락 처	(042) 481 - 4409